



12/31/2016-12/30/2017 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

New York City	
대규모 고용주(직원 11 명 이상)	소규모 고용주(직원 10 명 이하)
<b>최저 임금 \$11.00</b> 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16.50	<b>최저 임금 \$10.50</b> 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15.75
팁 받는 직원 최소 \$8.30 또는 \$9.35 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13.80 또는 \$14.85	팁 받는 직원 최소 \$7.95 또는 \$8.90 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13.20 또는 \$14.15

Long Island 및 Westchester County
<b>최저 임금 \$10.00</b> 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15.00
팁 받는 직원 최소 \$7.55 또는 \$8.50 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12.55 또는 \$13.50

그외 나머지 뉴욕 주
<b>최저 임금 \$9.70</b> 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14.55
팁 받는 직원 최소 \$7.35 또는 \$8.25 40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\$12.20 또는 \$13.10

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혹은,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시려면 [www.labor.ny.gov/minimumwage](http://www.labor.ny.gov/minimumwage) 를 방문하거나 다음의 번호로 전화하십시오: **1-888-469-7365**.

임금을 상기에 명시된 최저 임금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공제액 및 수당:

- **팁** - 고용주는 근로자의 팁(봉사료) 중 일정 금액을 사용하여 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. 이를 팁 공제액이라고 합니다. 고용주는 임금과 팁의 합계가 최저 임금 이상일 경우에만 팁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고용주는 최소 상기에 명시된 팁 받는 직원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
- **식사와 숙소** -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제공한 식사와 숙소에 한해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적용 금액과 요건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임금 규정 및 요약에 나와있습니다.

상기에 명시된 최저 임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 임금:

- **초과 근무 수당** - 주당 40시간(상주 직원의 경우 44시간) 이상의 초과 근무 수당은 정규 임금의 1 1/2배이어야 합니다(상기에 명시된 초과 근무수당 미만일 수 없음).  
*예외:* 주급이 최저 임금의 75배 이상인 봉급(일정급여)을 지급 받는 전문직 근로자 또는 임원 및 관리 직원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.
- **출근 수당** - 근무일정대로 출근했는데 고용주에 의해 조기 퇴근이 지시되었을 경우, 조기 퇴근일에 대해 최저 임금이 적용된 시간 외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**총 근무지 체류 시간** - 하루 근로 시간이 10시간이 넘을 경우, 그 날에 대해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최저 임금 1시간의 임금과 동일한 금액의 추가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.
- **유니폼 관리** - 근로자가 자신의 유니폼을 직접 세탁할 경우, 추가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급금액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